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

2023. 9.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고시 해설서 활용 유의 사항

- 이 해설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교육부 고시에서 규정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범위와 방식의 기준에 대해 상세 해설하고 실제 유치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이 해설서는 최근 제정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3-30호, 2023.9.1. 제정 및 시행)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 법령 정비를 추진할 예정임
- 이 해설서에서 제시하는 예시는 모든 유치원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며, 사례로 제시된 경우라도 그 행위의 장소·시기·목적·내용·방법·대상·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유치원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단위유치원 여건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에서는 유아생활지도를 위한 교원의 지도방식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각 지도 방식에 관한 정의, 지도 방법 및 실시 요건, 현장 운영 시 유의점, Q&A 등의 방법으로 설명하여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아생활지도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 해설서에서 제시하는 ‘관련 판례’는 유사 사례에 대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사례별로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사례에 대하여 확대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목 차

1장. 총칙	1
2장.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17
1. 생활지도의 범위	17
2. 생활지도의 방식	23
1) 조언	23
2) 상담	25
3) 주의	31
4) 훈육	33
5) 보상	42
3장. 기타	44
1.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44
2. 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48
3. 이의제기	50
4. 기타	51
5. 재검토기한	52
[부록1]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54
[부록2] 아동학대 사건 관련 판례	61

1장. 총 칙

1. 목적

2. 정의

3. 교육 3주체의 책무

1. 목적

관련 조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제2항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생활지도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해설

- 이 고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유치원(유치원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도 포함하며 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유치원의 장(유치원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장도 포함하며 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교원이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이 고시에는 원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지침과 이와 관련된 바람직한 유치원 생활을 위한 교원 및 보호자로서 책무 등이 규정됨
- 원장 및 교원은 학습,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기타 분야에서 생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지도 방식으로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보상 등을 제시함

□ 현장 운영 시 유의점

- 유치원의 생활지도는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교육 3주체(원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 유아)가 협력하여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과정임
- 이 고시에서 제시하는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보상의 생활지도 방식은 통합적, 유기적으로 활용되어야 함
- 이 고시의 내용은 원장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의 기준이 되며, 이에 따른 원장 및 교원의 생활지도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관련 법령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함

참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의 요건]

- ①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④ 긴급성,
- ⑤ 해당 행위 외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 예시) 법률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사형의 집행, 의사가 환자의 다리를 절단하거나, 범인에 대한 체포행위나 정신병자에 대한 감호행위 등

2. 정의

가. 유아

관련 조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유치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유치원 과정에 학적을 둔 사람을 말한다.

□ 해설

- 유아란 유치원 및 특수학교의 유치원 과정에 재학 중인 모든 어린이를 의미함
- 재학이란 당해 유치원의 학생 신분(학적)을 보유함*을 의미함
- *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고시 제2023-4호」

관련 법령

- 「유아교육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5. 삭제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 (정의)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나. 교원

관련 조문

제2조(정의)

2.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어느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관 중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를 말하며 그 임용형태(기간제, 시간제 등), 담당직무(특수교사, 방과후 과정 담당 교사 등)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함
- 원장이란 해당 유치원에 임용된 원장 뿐만 아니라, 직무대행 및 원장의 직무에 대한 위임을 받은 교직원을 포함한 개념임

관련 법령

• 「유아교육법」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① 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소속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② 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유치원 업무를 관리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치원은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유아를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다. 교육활동

관련 조문

제2조(정의)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교육활동의 정의
 - 유치원의 교육과정 또는 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유치원의 안팎에서 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 및 수업 외 활동
- 교육활동의 예시
 - 수업, 현장체험활동 및 체육대회, 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원 시간
 -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유치원 체류시간
 - 원장의 지시에 의하여 유치원에 있는 시간

관련 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라. 유아생활지도

관련 조문

제2조(정의)

4. "유아생활지도"란 유치원의 장(특수학교의 장도 포함하며 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 (목적) 유아생활지도는 학습뿐 아니라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유아가 전인발달을 이루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필요성) 유아생활지도는 학습권을 보장하고,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함
- (유의점) 유아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유아가 올바른 삶의 방식을 형성하도록 지원해야 함

마. 조언

관련 조문

제2조(정의)

5. "조언"이란 원장과 교원이 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목적) 조언은 유아 혹은 보호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아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문제해결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필요성)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건전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필요함
- (유의점) 조언을 하기에 앞서 유아가 어떠한 점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조언의 방향을 세밀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바. 상담

관련 조문

제2조(정의)

6. "상담"이란 원장과 교원이 유아 또는 보호자와 유아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 (목적) 상담은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목표로 당면한 문제를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필요성) 원장, 교원, 유아, 보호자가 유아의 문제 예방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조력하는 과정이 필요함
- (유의점) 고시 내 생활지도 방식의 상담과 전문심리 상담은 구분됨
 - 당면한 문제가 유아의 성장 과정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적 수준이라면 생활지도 방식의 상담을 적용할 수 있음
 - 상담을 위해서는 사전 협의, 교육 3주체 상호 간의 상담 요청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상담 거부 또는 중단이 가능함

사. 주의

관련 조문

제2조(정의)

7. "주의"란 원장과 교원이 유아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목적) 주의를 유아 행동의 결과가 명백히 위험하거나, 유아의 위해가 예측되는 경우 이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필요성) 유치원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부적합한 물품이나 행동에 대한 지도가 필요함
- (유의점) 유아가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안내하고, 주의에 대한 지도 시 교원의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에 근거하여야 함

아. 훈육

관련 조문

제2조(정의)

8. "훈육"이란 원장과 교원은 제5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7조에 따른 주의로 유아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 제지, 물품 분리보관 등의 방법으로 훈육할 수 있다.

- (목적) 원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유아의 행동을 중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필요성)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지도 행위로 유아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은 일임을 깨닫고 긍정적인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함
- (유의점) 유아에 대한 행동중재가 어려운 경우 사용하도록 하며, 훈육이 필요한 상황과 방법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유치원규칙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함

자. 보상

관련 조문

제2조(정의)

9. "보상"이란 원장과 교원이 유아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목적) 원장과 교원이 유아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필요성) 유아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하거나 문제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필요함
- (유의점) 유아의 내재적 동기를 증진시키고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하기 위해 유아의 발달적 특성 및 개별 요구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함

3. 교육 3주체의 책무

관련 조문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

- ① 원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 유아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교육 3주체의 정의
 - 유아란 유치원 및 특수학교의 유치원 과정에 학적을 둔 사람을 말함
 - 교원이란 교육적 전문성을 지닌 자로 「유아교육법」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교장을 포함하여 그 지위가 인정되는 자를 말함
 - 보호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아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함
- 교육 3주체의 책무
 - 교육 3주체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함

가. 유아의 책무

관련 조문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

② 유아와 보호자는 유치원 규칙을 준수하고 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유아의 책임
 - 유아는 원장 및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따르도록 노력해야 함
 - 유아는 다른 유아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유아의 권리
 - 유아는 안전하고 학습에 도움이 되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으며 폭력,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인격체로서 존중 받아야 함
 - 유아는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여야 함
 - 유아는 안전한 유치원 환경 및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여야 함

참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의 4대 기본권리]

-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 보호권: 각종 위험과 차별대우 및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활동 등을 누릴 권리
-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관련 법령

•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①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 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 「유아교육법」

제3조(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

제21조의2(유아의 인권보장) ① 유치원의 설립자·경영자와 원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유아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제21조에 따라 유아를 교육하거나 사무를 담당할 때에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거나 고성, 폭언 등으로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제1항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나. 보호자의 책무

관련 조문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

- ② 유아와 보호자는 유치원 규칙을 준수하고 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⑤ 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 보호자의 책임

- 보호자는 유치원규칙을 수용하고 존중해야 하며, 유치원규칙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경우 적합한 절차에 따라야 함
- 보호자는 자녀의 유치원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지원해야 하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 보호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이해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함
- 예시: 입학 시 보호자에게 안내 후 보호자 확인, 교육과정 설명회 시 안내 후 보호자 확인 등

• 보호자의 권리

- 보호자는 유치원규칙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유치원규칙에 대해 안내를 요청할 수 있음
- 보호자는 자녀가 안전하게 생활하고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보호자는 자녀의 발달과 성장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조언 및 상담을 기대할 수 있음

관련 법령

-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②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제1항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6조(학부모의 책무) ①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다. 교원의 책무

관련 조문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

- ③ 원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유치원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④ 원장은 유아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 시설, 인력 등 제반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교원의 책임

- 원내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은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원장과 교원은 이를 바탕으로 유아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원장은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유치원규칙으로 정할 때 유치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함. 또한 그 내용을 모든 교육 3주체에게 공표해야 함
- 원장은 교원의 교권침해 사례를 인지하거나 신고를 받았을 경우 이를 축소·은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교원의 권리

- 교원은 유아를 정당하게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
- 교원은 안전한 유치원 문화 조성과 교육활동을 위하여 유아와 학부모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음
- 교원은 유아의 학습권 침해 및 보호자의 교권 침해에 대하여 정당하게 제재할 수 있음

관련 법령

• 「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

-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아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유아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유아교육법」

제21조(교직원의 임무)

- ① 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 ② 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유치원 업무를 관리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치원은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유아를 교육한다.
-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교육한다.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관리 및 교원의 보호조치
 2.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3.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
 4.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제2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장.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1. 생활지도의 범위

2. 생활지도의 방식

- 1) 조언
- 2) 상담
- 3) 주의
- 4) 훈육
- 5) 보상

1. 생활지도의 범위

관련 조문

제4조(생활지도의 범위)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유치원의 학급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
4.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6.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7.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8. 유아 간의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
9.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0. 그 밖에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생활지도의 범위

- 생활지도란, 유아가 안정되고 통합된 성장과 발달을 이루도록 돕는 교육적 활동으로 모든 발달 영역에서 생활지도가 이루어져야 함
- 생활지도의 범위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이 고시에서는 생활지도의 범위를 제4조의 각 호와 같이 분류함
- 각 호의 제시된 내용은 예시이므로, 개별 유아의 특성과 유치원 상황을 고려하여 유아에게 적용하는 생활지도의 범위가 정해질 수 있음

□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제4조제1호]

- 교원의 수업권

- 교원은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자율성과 책무성을 가짐
- 교원은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수업권을 행사하여야 함

관련 법령

- 「교육기본법」

- 제14조(교원)

-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학습권

- 유아는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놀이, 일상생활, 활동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경험을 통해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짐
- 유아의 학습권은 교원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때 실현 가능함

관련 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교육기본법」

- 제3조(학습권) ①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교원의 수업권 및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관련 생활지도가 필요한 경우 예시

- 교육 내용 및 방법에 대해 보호자가 무리한 요구를 반복·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 다른 유아의 학습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 수업 중 교원 또는 다른 유아에 대한 위협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 유치원의 학급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제4조제2호]

- 유치원의 학급분위기에 영향을 주는 물품의 소지·사용 제한 범위 예시
 - (물품의 소지 제한 범위)
칼, 가위, 송곳 등의 날카로운 도구, 장난감 칼·총, 공구, 레이저 포인터, 화학약품 등 유아 및 교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고가의 장난감 등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물품, 안전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눈에 띄는 장신구 또는 액세서리, 고액의 현금 등
 - (물품의 사용 제한 범위)
교사의 허락 없이 각종 전자기기 등을 활용하여 교육활동을 녹음·녹화하는 행위, 교재·교구 및 소지품을 허용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여 타인을 위협하거나 학급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등

□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 [제4조제3호]

-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 관련 생활지도가 필요한 경우 예시
 - (영양 관련)
식사 중 돌아다니거나 장난치는 등 올바르지 않은 태도로 식사하는 행위, 안전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행위 등
 - (건강관리 관련)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않거나 다른 유아의 휴식을 방해하는 등 건강관리에 소홀한 행위, 손과 몸 등을 씻지 않거나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지 않는 등 청결하지 않은 생활 습관, 타인의 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 등

관련 법령

- 「학교보건법」
제7조의2(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의 여건 및 특색을 고려하여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9조의2(보건교육 등)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4조제4호]

-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관련 생활지도가 필요한 경우 예시
 - 지능정보서비스(예시: 스마트폰, 인터넷 등) 과의존으로 인한 자기 조절력 저하 등의 문제행동, 흡연(간접흡연 포함) 또는 음주로 인한 폐해, 마약 등의 약물 오남용, 고카페인 식품의 섭취 등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
 - 자신과 타인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행위 등

관련 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시로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연 1회 이상

□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4조제5호]

-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관련 생활지도가 필요한 경우 예시
 - 다른 유아 및 교원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공격적인 행위, 물건을 의도적으로 던지거나 부수는 공격적인 행위, 자기 자신에 행하는 자학 행위 등
 - 유치원 시설(승강기, 출입문, 놀이터 등) 및 각종 탈 것(자전거, 킥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차량 등)을 위협하게 이용하는 행위, 보행 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등
 - 그 밖의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 과의존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와 관련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관련 법령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학생 안전교육) ① 학교의 장은 규칙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별표1]*과 [별표2]**에 따라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안전 관련 교육 및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통합 실시할 수 있다.

* [별표1] 학년별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 : 유치원은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단위활동

** [별표2] 학생 안전교육 내용 및 방법 :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 과의존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제4조제6호]

-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관련 생활지도가 필요한 경우 예시
 - 유아 간·유아와 교원 간 지켜야 할 예의범절에 대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
 -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하는 차례와 질서에 대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
 -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오거나 훔치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관련 법령

-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정의) 2.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제10조(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③학교의 장은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덕목을 중심으로 학생의 인성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제4조제7호]

-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관련 생활지도가 필요한 경우 예시
 - 욕설 및 폭언, 유행어, 속어,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
 -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반복·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 지속적인 놀림, 조롱, 비하하는 말 등으로 타인에게 모욕감 및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 유아 간의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 [제4조제8호]

- 유아 간의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 관련 생활지도가 필요한 경우 예시
 - 다툼 등과 같은 갈등을 부정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 지속적인 고자질,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경우
 - 타인을 따돌리는 경우, 타인이 하기 싫은 행동을 강요하는 경우, 힘을 과시하며 타인을 위협하는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제4조제9호]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장애를 가진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하는 태도를 기르고 장애인을 만났을 때 대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함
 - 학습·놀이 활동 등 일과 중에 비장애유아와 장애유아들이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유아 대상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영상자료, 놀이 등 유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관련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다문화유아의 한국어 소통 부족, 문화적 차이, 자아정체성의 혼란 등에 대한 인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인종 차별, 언어 능력의 결여에 대한 무시 등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함

□ 그 밖에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제10호]

- 유치원은 해당 지역의 특성 및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생활지도에 필요한 내용을 유치원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예시
 - 유치원 시설이용, 타인의 소유물 존중, 소지 물품, 언어사용, 실내예절 등
 - 유치원 출입에 관한 사항(방문증 패용 등의 적합한 절차 등)

2. 생활지도의 방식

1) 조언

관련 조문

제5조(조언)

- ①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유아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② 유아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조언'의 정의

- 원장과 교원이 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

□ '조언'의 지도방법 및 실시

- 유아의 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평소 관찰을 바탕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실시
- 원활한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의 원인과 조언의 방향을 설정하여 실시
- 유아의 개인적인 일, 가족, 주거 등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 되어야 함
- 유아의 균형 잡힌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관련 법령

- 「대한민국헌법」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교육기본법」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 ①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처리·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학생정보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 현장 운영 시 유의점

- 조언 시 유아의 개인차와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찰을 통한 다양한 기록물(포트폴리오, 일화기록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부정적인 어투보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방향으로 조언하는 것이 효과적임
 - 예시: “사용한 놀잇감을 제자리에 정리하면 필요할 때 쉽게 찾을 수 있단다”
-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유아의 경우 보호자의 협력이 중요함

Q&A

Q. 전문가의 조기 개입과 지원 등을 위해 보호자에게 조언을 하였으나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조기 개입과 지원 등에 대한 조언은 유아의 관찰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 보호자가 진단과 치료 등에 대한 책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 상담, 연계된 치료 지원 서비스 등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여야 함

2) 상담

관련 조문

제6조(상담)

- ① 원장과 교원, 유아 또는 보호자는 유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유아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원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 ⑦ 원장과 교원은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상담'의 정의

- 원장과 교원이 유아 또는 보호자와 유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

□ '상담'의 지도방법 및 실시

- 원장과 교원, 유아, 보호자가 유아의 문제를 예방하거나 혹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을 함께 조력하는 과정
- 교원과 보호자의 상담은 교사의 수업권 및 유아의 학습권이 방해되지 않도록 수업 외의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함
 - ※ 다만, 원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은 상호 협의를 통해 상담 시간을 정할 수 있음

- 원장과 교원은 상담의 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하여야 함
 - 유아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의도나 계획을 가진 경우
 -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 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
 - 감염병이 발생하여 신고해야 하는 경우

관련 법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원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상담 시간·내용·장소·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원장과 교원은 보호자의 상담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하나(사전에 협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상담 거부 가능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사전 협의 없이 유치원을 방문하여 일방적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 수업 중 전화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다른 학급에 속한 유아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 유치원과 교원의 권한을 넘어선 사항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 부모가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 상담 관련 직무범위: 수업 및 유아 지도와 관련된 영역, 행정 업무 영역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 교사의 출근 전·퇴근 후 등의 시간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 학사일정으로 계획된 보호자 상담은 사전 협의를 통해 근무 시간 외 상담이 가능함
- 원장과 교원은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으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으며, 교직원에게 도움 요청 가능

□ 현장 운영 시 유의점

- 원장과 교원은 보호자와의 상담 시 상담의 내용이 비밀 보장됨을 알려주어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
- 유아와의 상담 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유아의 특성에 맞는 상담을 하는 것이 효과적임
 - 유아가 하는 질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진솔하게 반응하여야 함
 - 유아에게 질문할 때 ‘무엇’, ‘어떻게’ 등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유아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유아가 상담에 참여하기 힘들어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옆에 나란히 앉기’, ‘유아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등 상담과는 무관하지만 유아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유아의 긴장감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Q&A

Q. 상담을 요청하면, 해당되는 사람은 반드시 상담에 응해야 하나요?

- A. 보호자는 자녀의 바른 인성 함양 및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이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아의 성장을 지원해야 함.
- 원장, 교원, 보호자는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경우 응해야 하나,
 -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상담이나 직무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는 상담을 거부할 수 있음

Q. 상담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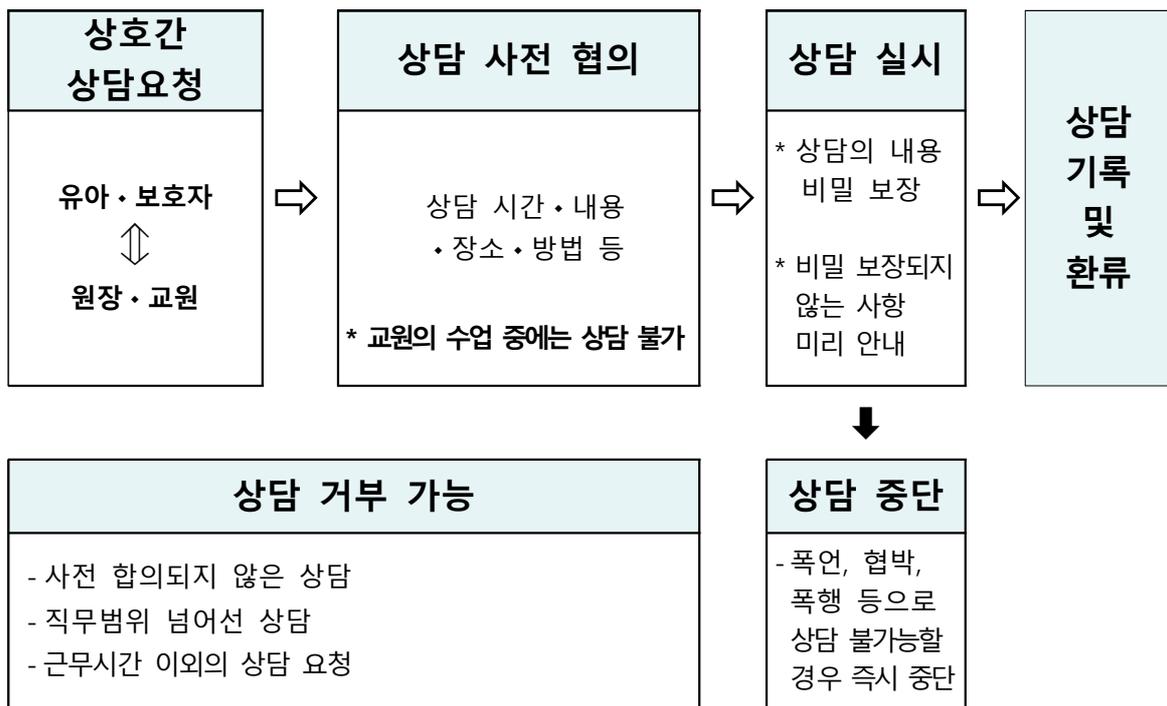
- A. 공식 요청에 의한 상담인 경우에는 기록을 남기는 것을 권장하나, 유아와의 가벼운 상담인 경우에는 개인 메모 형태로 핵심만 기록하는 것도 가능함.

Q. 상담 시 녹음 및 녹화는 어떤 상황에 가능한가요?

- A. 사전에 녹음 및 녹화 허용에 대한 공지가 된 경우에는 가능함. 사전 공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담에 참여한 사람이 모두 동의했을 때 허용되며, 동의하지 않은 녹음 및 녹화가 진행됨을 인지한 경우 상담을 중단할 수 있음

참고

< 상담 절차의 예시 >



■ 일반 원칙

-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을 하는 경우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상호 예의를 지키고, 사용하는 구어와 문장은 경어를 사용한다.
- 교원과 보호자의 상담내용은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유아의 교육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다.
- 교원과 보호자는 사전에 상호 간에 상담 일시 및 방법 등을 협의해야 하며, 상담은 상호 협의된 시간과 방법에 따른다.
- 교원과 보호자는 교원의 근무시간 중 상호 협의된 시간 내에서 상담을 한다.
- 교원과 보호자는 교원이 수업중인 시간에 상담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대면 및 전화 상담 원칙

- 교원과 보호자는 상호 간에 사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 대면 상담은 안전 등이 확보된 유치원의 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보호자는 전화 상담을 하려는 경우, 유치원의 전화를 통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교원이 동의한 경우 교원의 개인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 문자 및 SNS 상담 원칙

- 교원과 보호자는 동일한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내서는 아니된다.
- 문자 및 SNS 상담은 교원의 근무시간 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원과 보호자가 상담이 아닌 단순 사실 확인 등의 정보교환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교원의 근무시간 이외에도 문자 또는 SNS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다.
- 교원과 보호자는 상호 간에 주고 받은 문자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사진, 동영상 등의 미디어를 보내서는 아니된다.

■ 이메일 상담 원칙

- 교원과 보호자는 상대방의 이메일 메시지에 성실히 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반복적인 이메일에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보호자가 이메일 상담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메일에는 상담 요청자 및 용건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교원과 보호자는 상호 간에 주고 받은 이메일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사진, 동영상 등의 미디어를 이메일에 포함하여 보내서는 아니된다.

■ 상담의 제한

- 교원은 상호 협의된 상담이더라도, 상담하려는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밝히고 상담을 거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 ①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인 경우
 - ② 교원이 위협을 느끼는 도구, 흉기 등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 ③ 교원에게 폭언, 욕설, 협박 등을 하는 경우
 - ④ 교원 등에게 물리력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 ⑤ 교원의 직무 의무가 없는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 ⑥ 교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질의·요구하는 경우
 - ⑦ 상호 협의된 시간을 벗어난 시간에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
 - ⑧ 근무시간 이외의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

■ 유치원의 장 및 교원의 책무

- 유치원의 장은 교원의 상담활동에 필요한 상담시설을 구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교원은 상담을 위한 최신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습득·유지하기 위해 교육과 연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3) 주의

관련 조문

제7조(주의)

- ①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행동이 유치원 안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② 원장과 교원은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원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유아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유아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8조에 따른 훈육을 할 수 있다.
- ④ 원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유아가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장과 교원은 유아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 '주의'의 정의

- 원장과 교원이 유아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

□ '주의'의 지도방법 및 실시

- 유아의 행동이 유아, 교원, 시설 등을 포함한 유치원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그 위험성을 지적하거나 경고할 수 있음
 - 수업시간 부적합한 물품사용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의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음
 - 유치원규칙에서 정한 부적합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장과 교원은 유아와 함께 올바른 물품 사용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주의 후에도 이를 어길 경우 분리하여 보관 및 처리할 수 있음을 사전 안내
- *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 제4조제2호 참고
-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훈육 지도 가능함
 - 사전에 주의를 주었음에도 유아가 이를 무시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원장과 교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예시: 복도에서 뛰는 유아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주의 지도를 하였지만 계속해서 뛰는 행동으로 인해 넘어지면서 몸에 상처가 난 경우

□ 현장 운영 시 유의점

-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유치원의 시설을 점검하고 예측되는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의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유아의 안전한 생활 및 원내 안전 질서를 위하여 유아가 지켜야 할 규칙이 있음을 안내하여야 함
- 교원은 유아 행동에 대해 주의를 줄 때, 교원의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투로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임

Q&A

Q. 위험성이 없는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소지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위험성이 없지만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이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소지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줄 수 있음. 하지만 제8조제5항(훈육)의 분리보관을 해야 하는 '소지가 제한되는 물품'일 경우에는 물품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고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해야 함.

4) 훈육

□ '훈육'의 정의

- 원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유아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

□ '훈육'의 지도 방법 및 실시

- 조언과 주의를 반복적으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행동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이 가능함
- 유아의 전인발달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유아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이때, 개별 유아의 발달적 특성 및 요구를 고려하여야 함

□ 현장 운영 시 유의점

- 유아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훈육 시 교원은 유아에게 훈육 내용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함
- 훈육이 필요한 상황과 훈육의 내용·방법 등에 대해 보호자에게 사전에 안내 하여야 함

가. 지시

관련 조문

제8조(훈육)

- ① 원장과 교원은 제5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7조에 따른 주의로 유아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 제지, 물품 분리보관 등의 방법으로 훈육할 수 있다.

□ '지시'의 지도 방법 및 실시

- 유아의 전인발달과 안전한 유치원 생활 등 교육적 목적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지시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예시: 자신과 타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시, 유아의 행동 변화를 위한 지시 등
-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정신적·물리적 고통을 수반하도록 하는 지시는 불가능 함

□ 현장 운영 시 유의점

- 유아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사고 예방 등 유아의 전인발달 및 안전한 유치원 생활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함
- 유아의 발달특성 상 규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지시 지도를 하여야 함

Q&A

Q. 유아가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교사의 반복적인 지시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행동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가정 연계 지도를 할 수 있음

나. 제지

관련 조문

제8조(훈육)

- ② 원장과 교원은 유아가 법령과 유치원규칙에 의해 금지된 행동을 하는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써 제지할 수 있다.
- ③ 원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유아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제지'의 지도 방법 및 실시

- 유아가 법령과 유치원규칙에서 금지된 특정한 행동을 하거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제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음
 - 예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치원규칙에 명시된 금지사항 등
- '긴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교원의 전문적 판단이 존중되어야 함
 - 유아가 피해를 끼친 정도나 끼칠 가능성, 위험한 물건 소지 및 사용 여부, 기타 현장 상황 등을 기준으로 판단
 -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제적으로 제지 가능
- 구두 제지
 - 교권침해, 유치원규칙 위반 등의 행위를 목격한 교원이 필요에 따라 즉시 구두로 제지 할 수 있음
 - ※ 구두 제지 시 별도의 원장 보고, 보호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는 없음
 - 구두 제지의 내용에는 유아의 규칙위반 등의 내용을 포함
 - 구두 제지를 할 경우 감정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어 사용 금지

- 물리적 제지

-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음

- '물리적 제지'는 긴급한 상황*에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체벌'과는 다르며, 체벌**은 금지되어야 함

- * (긴급한 상황) 대상 유아가 피해를 끼친 정도나 끼칠 가능성, 흥기나 위험한 물건 소지 및 사용 여부, 기타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장에 있는 교원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긴급한 상황 예시: 계단, 난간 등 위험한 장소에 올라가거나 뛰는 경우, 타인에게 정서적·신체적 폭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가하는 경우 등

- 예시: 다른 유아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유아의 신체 일부를 붙잡아 공격적인 행동을 멈추게 하는 행위(물리적 제지)

** 체벌: 특정의 행동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

- 물리적 제지 시 원장과 교원은 다른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 교원은 물리적 제지 이후 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원장은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신속히 알려야 함

관련 법령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에 관한 고시」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유아교육법」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①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 현장 운영 시 유의점

- 수업 상황의 경우 다른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문제행동에 대해서 짧고 명료하게 구두로 제지하여야 함
- 물리적 제지를 사용하기 전 구두 제지를 2~3회 이상 충분히 하는 것이 권장되나, 긴급성을 고려하여 생략할 수 있음

Q&A

Q. 유아에게 훈육을 할 때 반드시 조언, 상담, 주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친 후 제지를 실시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인 교육활동 상황에서는 조언이나 상담 또는 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훈육을 실시해야 함. 다만, 유치원규칙에 따른 금지행동을 하는 유아에게는 구두 제지를 바로 할 수 있고,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등의 긴급한 경우에는 곧바로 물리적 제지도 할 수 있음

다. 물품 분리보관

관련 조문

제8조(훈육)

- ⑤ 원장과 교원은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기타 유치원규칙으로 정하여 소지를 금지한 물품

□ '물품 분리보관'의 방법 및 실시

- 원장과 교원은 유치원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유아가 소지하면 안되는 물품에 대해 안내하여야 함
- 유치원규칙에 따라 분리보관이 가능한 물품의 경우
 1.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 칼, 가위, 송곳 등의 날카로운 도구, 장난감 칼총, 공구, 레이저 포인터, 화학약품 등
 2.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 술, 담배, 본드, 부탄가스, 마약류 등
 3. 기타 유치원규칙으로 정하여 소지를 금지한 물품 예시
 - 유치원 안전과 교육활동을 위해 유치원규칙으로 정하여 소지를 금지한 물품 등
 - 예시: 학습의 분위기를 해치는 물품(고가의 장난감, 고액의 현금, 교사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전자기기 등)

□ 현장 운영 시 유의점

- 유아가 유치원규칙으로 정한 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함

Q&A

Q. 유아 개인의 전자기기를 유치원에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유치원규칙으로 정하고 싶은데,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들 중에는 자녀의 안전이 걱정되어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물품 분리보관과 관련하여 유치원규칙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A. 유아들이 개인 전자기기를 가지고 오는 것을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태블릿 등의 전자기기 소지와 사용 허용범위에 대해 유치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등원 후에는 전자기기를 가방에 넣어 보관하도록 하고,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반영할 수 있음.

관련 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 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나. 청소년유해물건

- 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2)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3)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라. 귀가 조치

관련 조문

제8조(훈육)

- ⑥ 원장과 교원은 다른 유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유아의 질병 및 건강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에게 유아의 귀가를 요청할 수 있다.

□ '귀가 조치'의 방법 및 실시

- 유아 본인 및 유치원 구성원들의 건강을 위하여 질병 및 건강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을 시 보호자에게 유아의 귀가를 요청할 수 있음
 - 법정 감염병 감염이 의심 되는 경우,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혹은 감염된 경우, 확산 방지를 위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의 경우, 수업을 받을 수 없을 정도의 상태인 경우 등

□ 현장 운영 시 유의점

- 가능한 독립된 장소를 마련하여 유아가 귀가하기 전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야 함
 - 독립된 장소일 경우, 교직원의 시야에 유아가 들어올 수 있는 안전한 장소 마련
- 특별한 증상(예시: 발열, 발진, 구토, 황달, 구역질 등)이 있는 경우 보호자에게 증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여야 함

Q&A

Q. 보호자의 사정으로 가정 내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정부와 지방자치의 관련 지원사업을 안내할 수 있음

- 예시: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돌봄대상은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임)

관련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 법정 감염병으로 인하여 결석하더라도 ‘출석인정’ 가능
 - 유아기에 많이 걸리는 법정 감염병: 수두,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유행성이하선염, 유행성 각막결막염, 성홍열 등

•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 중지)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등교 등의 중지) ①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감염병 병원체보유자. 다만,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환자로서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 사람
-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등교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5) 보상

관련 조문

제9조(보상)

원장과 교원은 유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 '보상'의 정의

- 원장과 교원이 유아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

□ '보상'의 지도방법 및 실시

- 유아의 바람직한 행동 장려 및 문제행동 교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
 - 긍정적 피드백(예시: 칭찬*, 격려**)
 - * 칭찬: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말을 높이 평가함. 또는 그런 말(외적인 성취에 집중)
 - ** 격려: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워 줌(내적인 동기와 노력에 집중)
 - 비언어적 메시지(예시: 따뜻한 눈맞춤, 어깨를 토닥여주는 스킨십, 미소, 공감과 수용을 나타내는 끄덕임 등)
 - 교원과 유아가 함께 정한 보상의 방법

□ 현장 운영 시 유의점

- 칭찬과 격려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유아의 내재적 동기를 증진시키고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하는 것을 권장함
- 원장과 교원은 학급 및 연령 단위의 보상 방법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유아의 발달적 특성 및 유치원 상황에 따라 마련할 수 있음
-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거나 유아의 건강을 해치는 보상 수단의 사용을 자제하여야 함

Q&A

Q.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보상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A. 모든 아이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보상의 방법보다는 개별 유아의 특성을 파악하여 보상의 방법과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3장. 기 타

1.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2. 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3. 이의제기
4. 기타
5. 재검토기한

1.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관련 조문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 ① 원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 ② 원장은 「유아교육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 대상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통합학급의 유아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

- 원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유아가 유치원규칙에 따라 기본적인 공중도덕과 질서 의식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함
-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는 특수교육대상유아가 지닌 발달 특성과 장애 정도로 인해 유치원 규칙을 다른 유아들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하여야 함
 - ※ (예시) ▲ 생활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쉬운 글 또는 그림이나 사진 등 시각적 단서로 제공 ▲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시각, 청각, 촉각 등을 활용하여 지도
- 원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분리·거부 등 차별적 생활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원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생활지도 시 유치원과 가정, 사회 간 연계 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유치원에서의 특수교육대상자 생활지도

- 「유아교육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각급학교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교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연 1회 이상 (학기별 1회 이상 권장) 실시하여야 함

- 원장은 특수교육대상유아가 배치된 학급의 담임교사 등이 장애유아에 대한 이해증진과 지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 장애유형별 교수·학습 지도 방법, 긍정적 행동 지원, 보조공학기기 활용, 통합학급 운영 등
- 원장은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장애 정도와 특성,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합학급의 유아 수를 감축 조정하고, 특수-일반교사 간 협력하는 유치원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원장은 유치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생활지도를 위해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교원이 동일한 책무성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교원 간의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현장 운영 시 유의점

-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발달 수준을 파악하고 과제 수행이 가능한 근접 발달 영역 내에서 성인 또는 또래의 지원을 통해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 원장은 행동중재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유아를 대상으로 시도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행동중재지원단의 지원을 받거나 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행동중재지원팀을 구성할 수 있음
 - * 교수, 교육전문직, 특수교육교원(행동중재 관련 연수 이수 또는 자격 소지 교사 등), 치료사, 상담교사(상담사), 의사 등
- 원장은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장애 유형·정도 및 심리·정서적 특성을 고려하여 문제행동의 유형과 심각성 수준에 따른 개별 지원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유치원 또는 가정 방문, 교사, 보호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원장은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행동 중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개별화교육계획에 포함하여야 함
 - ※ 단, 일상적인 생활지도로 충분히 가능한 사항까지 개별화교육계획에 일괄적으로 포함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행동 중재 지원 정도에 따라 시도교육(지원)청 행동중재지원단, 전문기관 및 가정 연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개별화교육계획에 포함할 수 있음

-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문제행동 지도 시 교정적 접근을 하기보다는 행동의 기능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안적 행동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함

Q&A

Q. 바깥 놀이에서 특수교육대상 유아가 단체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A. 외부 공간에서 놀이 활동을 하는 시간이므로 모든 유아에게 안전한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함. 유아가 활동 공간의 범위를 벗어나려고 할 경우, 이름을 자주 호명해 주거나 또래 도우미의 시범, 선호하는 놀이(음악) 등을 활동에 포함할 수 있음. 지속적으로 자리 이탈 행동이 반복될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적응에 필요한 행동 중재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음

Q. 우리 아이가 특수교육대상 유아와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학부모 문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원장 및 교원은 입학 전 학부모 대상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으로 특수교육대상 유아와 함께 교육활동이 이루어짐을 안내하여야 함. 아울러, 모든 유아의 기본적 교육권리 보장과 통합교육의 효과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학부모 연수, 홍보자료 배부, 장애 인식개선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관련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관련 조문

제11조(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원장과 교원은 유아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정의

- 소속 유치원의 유아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생활지도 불응 시 가능한 조치

-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전인발달을 위하여 교원은 고시에 제시된 생활지도의 방식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음
 - 교원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 교육활동 방해 등의 불응이 지속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원장에게 보호조치를 요청하여야 함
 - 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1. 심리상담 및 조언: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원은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음. 관할 지역 내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초기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 교육청에서 지정한 협력 기관과 연계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음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받은 경우 치유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음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3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음

관련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제3항에 따른 관할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Q&A

Q. 보호자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부정적인 표현을 하여 이로 인해 교원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러한 경우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볼 수 있나요?

A. 「교육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호자의 이의 제기 및 의견 제시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무조건 교육활동 침해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에게 모욕적인 행동이나 폭력적인 행동 등 별도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다면 이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볼 수 있음.

3. 이의제기

관련 조문

제12조(이의제기)

- ① 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 이의제기 및 원장의 답변 의무

- 유아의 보호자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이치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장에게 14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이의제기의 방법으로는 유선, 면담, 서면 등이 있으며 생활지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음
- 원장은 제기된 내용에 대하여 생활지도의 상황, 방식, 필요성 등을 확인하고 유아의 보호자에게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함
- 단, 동일한 내용에 대한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이의사항에 대해서는 2회 이상 답변 후 답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4. 기타

관련 조문

제13조(기타)

원장은 이 고시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유치원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유치원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

- 「유아교육법」 제10조(유치원규칙)에 따라 원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유치원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여야 함
 - 이 고시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
 1. 제4조제10호(생활지도의 범위 중 그 밖에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 제8조제5항(훈육의 방법 중 물품 분리보관)
 3. 제13조(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 ※ 유치원규칙 제·개정 시 제8조제5항(분리보관 가능한 물품)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제4조제10호 및 제13조의 경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별도로 정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정하지 아니하여도 됨

□ 운영 시 유의사항

- 원장과 교원은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유치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생활 지도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유치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 원장은 유치원규칙 제·개정 시 교육 3주체의 의견을 수렴하되, 고시의 성격이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 이 고시에 따라 단위 유치원별로 유치원규칙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유치원 및 교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유치원규칙은 교육 3주체가 서로 존중하고 책무를 준수하며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관련 법령

• 「유아교육법」

제10조(유치원규칙) ①유치원의 장(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유치원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정원
 3. 교육 내용
 4. 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방법
 5.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
 6. 수업료·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 6의2.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
 7. 유치원규칙의 개정절차
 8. 다른 법령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 ② 사립유치원의 장은 유치원규칙 중 제1항제2호·제6호·제6호의2·제8호 또는 제9호 외의 사항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할 날부터 30일 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재검토기한

관련 조문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 록

1.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2. 아동학대 사건 관련 판례

교육부고시 제 2023-30 호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4조제2항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생활지도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유치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유치원 과정에 학적을 둔 사람을 말한다.
2.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어느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관 중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유아생활지도”란 유치원의 장(특수학교의 장도 포함하며 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5. “조언”이란 원장과 교원이 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6. “상담”이란 원장과 교원이 유아 또는 보호자와 유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7. “주의”란 원장과 교원이 유아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8. “훈육”이란 원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유아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9. “보상”이란 원장과 교원이 유아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 ① 원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 유아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유아와 보호자는 유치원규칙을 준수하고 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③ 원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유치원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④ 원장은 유아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 시설, 인력 등 제반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⑤ 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른 생활지도를 존중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제4조(생활지도의 범위)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유치원의 학급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
4.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6.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7.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8. 유아 간의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
9.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0. 그 밖에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조언) ①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유아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② 유아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상담) ① 원장과 교원, 유아 또는 보호자는 유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유아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원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 ⑦ 원장과 교원은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주의) ①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행동이 유치원 안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② 원장과 교원은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원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유아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유아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8조에 따른 훈육을 할 수 있다.
- ④ 원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유아가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장과 교원은 유아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8조(훈육) ① 원장과 교원은 제5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7조에 따른 주의로 유아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 제지, 물품 분리 보관 등의 방법으로 훈육할 수 있다.

② 원장과 교원은 유아가 법령과 유치원규칙에 의해 금지된 행동을 하는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③ 원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유아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⑤ 원장과 교원은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기타 유치원규칙으로 정하여 소지를 금지한 물품

⑥ 원장과 교원은 다른 유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유아의 질병 및 건강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에게 유아의 귀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보상) 원장과 교원은 유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3장 기타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원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원장은 「유아교육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 대상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통합학급의 유아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원장과 교원은 유아 또는 보호자가 생활 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이의제기) ① 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원장은 이 고시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유치원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규칙에 관한 특례) 제4조제10호, 제8조제5항, 제13조에 따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유치원규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유치원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신체적 학대 판례

[관련 판례] 신체적 학대

▶ 피고인은 ○○유치원○○반 담임교사이고, 피해아동A 및 피해아동B는 각○○반 아동이다. 피고인은 A가 다른 아동들의 장난감을 빼앗고 괴롭히는 것을 제지하던 중, A가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자 A를 책상쪽으로 들어 올려 강제로 앉힌 후 A의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B가 같은 반 유치원생을 발로 차는 행동을 하자, 앉아 있는 B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 아동의 가슴을 1회 밀어 뒤로 넘어뜨렸다.

⇒ **(학대 인정)** 유치원에서 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담임교사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나 훈육하기 위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도, 그것이 피해 아동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고, 향후 피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있어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것임

- 울산지방법원 2017노191 -

[관련 판례] 신체적 학대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교실 안에서 산만하게 행동하며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피고인의 앞에 앉게 한 다음 피해 아동의 양쪽 뺨을 손으로 세게 움켜잡아 피해 아동의 얼굴에 굵은 자국이 남게 하였다.

⇒ **(학대 인정)**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아동에게 학습지를 구기지 말 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였다는 피고인의 훈육의도를 고려하더라도 정당한 보육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학대 행위를 함

- 광주지방법원 2017노2712 -

[관련 판례] 신체적 학대

- ▶ 피고인은 ○○유치원 ◇◇반 교실에서 점심을 하고 있던 아동이 밥풀을 책상 밑에 붙이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왜 그렇게 하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동의 왼팔을 잡은 다음 힘껏 끌어당겨 일어나게 하고, 아동이 눈을 맞추지 않자 다시 양손으로 아동의 양팔을 잡은 다음 힘껏 끌어내려 바닥에 주저앉힘. 양손으로 아동의 양팔을 잡고 2~3회 흔들며 책상밑에 붙어 있는 “밥풀을 보라”며 아동의 팔을 잡고 끌어당기는 행위를 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상을 가했다.
- ⇒ **(학대 인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함

-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1565 -

2. 정서적 학대 판례

[관련 판례] 정서적 학대

- ▶ 피고인은 피해 아동(만3세)이 점심을 제대로 먹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저항하는 피해 아동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왼쪽 다리를 손으로 눌러 자세를 강압적으로 교정하고, 양손으로 아동의 양쪽 팔을 잡아당긴 후 손가락을 쥐고 있는 아동의 오른손을 잡고 그 손가락을 아동의 입에 넣어 음식을 강제로 먹도록 했다.
- ⇒ **(학대 인정)**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교사로서 피해 아동 부모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 아동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판단함

- 울산지방법원 2017노472 -

[관련 판례] 정서적 학대

▶ 피고인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매일 제공하는 오전 간식, 중식, 오후 간식을 피해아동(4세)으로 하여금 다른 아동들과 같이 먹도록 하지 않고 6월 중 25회, 7월 중 15회 상당을 의자 없이 바닥에 앉아서 사용하는 조그만 책상과 교실 구석에 있는 언어영역 책상에서 혼자 먹도록 배제하였다.

⇒ **(학대 인정)**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기 보다는 지나치거나 잘못된 방법이라는 하지만 질서 유지 또는 훈육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반드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할 필요는 없는바, 피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아동학대라고 봄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고단434 -

3. 방임 관련 판례

[관련 판례] 신체적 학대 방조

▶ 유치원 교사 A가 피해아동(남, 6세)으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팔을 붙잡아 사물함 쪽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아동의 팔을 붙잡고 몸을 수차례 흔들어서 양팔이 굽히고 머리가 들게 하였으며,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피해아동의 신발을 강제로 벗겨 세게 집어던져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그런데 피해아동의 담임교사인 피고인은 A가 위와 같이 피해아동에 대해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피해아동의 담임교사로서 제지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 검사는 피고인이 A가 피해아동에 대해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한 것으로 기소하였다.

⇒ **(학대 인정)** 법원은 피고인이 A가 상당한 시간에 걸쳐 피해아동에 대해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서도 피해아동의 담임교사로서 A를 제지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방법으로 A의 아동학대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고단3127 -

[관련 판례] 방임

▶ 유치원 운전기사(甲)와 원장(乙)은 유치원 통학버스에 아동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점심식사를 챙겨주다가 피해아동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음. 피고인 甲은 다시 돌아가 버스 안에 피해 아동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유치원에 돌아왔으며, 피해 아동은 약 13분 동안 버스에 홀로 방치되어 있었음

⇒ **(학대 불인정)** 피고인들에게 과실에 의한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음을 별론으로 하되, 피고인들의 행위가 방임행위에 이르렀다거나 방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함.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를 하고자 마음먹을 동기가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음. 피고인들은 바로 피해 아동을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피해아동이 버스에 혼자서 방치된 시간은 약 13분 정도임.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을 발견한 다음 바로 피해 아동을 유치원에 데려왔고, 돌아오는 길에 울음을 터뜨리는 등 놀란 피해아동을 달래며 음료와 점심식사를 챙겨주었으며, 피해아동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그날 있었던 상황을 설명함.

-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872 -